<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 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 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 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 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 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20100300021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2010.05.11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2024.11.18

www.아낙촌.com leeic8900@naver.com



정보공개서

[아낙촌FC]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아낙촌 FC]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 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부산시 사상구 낙동대로 722. 4층(엄궁동)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051-314-3399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0508-920-8900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대표 이인철 010-3855-8900 (공개)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ш.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기	자의 부담
٧.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게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 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 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 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아낙촌		부산시 사상구 낙동대로 722, 4층(엄궁동)					
아낙촌FC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of the control of the	개인사업자		2015.01.01	이인철	051-314-3399		0508-920-8900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606-16-41590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없습니다.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아낙촌]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아낙촌	정성어린 아낙네의 손맛으로 낙지와 해산물이 맛깔스럽게 어울어진 곳
상 호	아낙촌 점	
상표(서비스표)	अंडे धर्म सह विशेष्ट ०) दुः	서비스표 등록번호: 4102138190000 등록일자:2011년07월21일 소유자:이인철
광 고	高田田田 大山宗郎 の人大寺	
그 밖의 영업표지	박지명가 아낙촌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연도 자산종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1'-1-	자산송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 당기순이잌
--	-------	------	------	------	-----	------	---------

2021년	44,488	34,854	9,634	637,200	79,950	90,392
2022년	42,546	33,013	9,534	742,513	95,889	104,899
2023년	178,954	29,795	149,159	1,009,516	135,924	137,159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첨부하며, 당사는 [2004년 05월]개인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법인으로 전환 또는 법인으로 전환한 다음 개인사업자로 재 전환한 사실이 없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직영점이 재개발로 인하여 23년 말 폐업 및 이전하기 이해 일시적으로 1개 직영점을 추가 개업으로 2곳의 23년 재무상황을 합산 작성하였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영업표지	연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ŭ.i.	매출액	상한	하한			
	2021년	1)의 매출액과 같음					
아낙촌	2022년	1)의 매출액과 같음					
	2023년	1)의 매출액과 같음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전면역구	기급	선 석기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가맹사업 관련 임원		2004.05.06~2023.01.09	대표	가맹업무 전반
관련 임원			2023.01.10~	归丘	지역 재 개발로 직영점 폐업 후 재 개업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x] 7-j	임원=	수(명)	직원수(명)
시점	상근	비상근	직원구(형)
2023년 12월 31일	1	0	4(명)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 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아낙촌	가맹점	2009.12.30 출원	출원 제4120090031841	이인철	2031.07.21
(상표권)	운영에만 사용	2011.07.21 등록	등록 제4102138180000	(이인철)	(본사대표)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하며,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www.kipris.or.kr)

п. 가맹본부의 [아낙촌] 가맹사업 현황

1. 아낙촌 가맹사업 시작한 날 : 2010년 5월 11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04년 5월 6일 개업 운영하던 중 지역 재 개발로 2023년01월09일 폐업 후 인근에 2023.01.10 재 개업함)

2. [아낙촌] 연혁

가맹본부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아낙촌FC	아낙촌	이인철	2004.05.06 ~	부산시 사상구 낙동대로 722, 4층(엄궁동)

3. [아낙촌] 업종

영업표지	업종					
아낙촌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아무근	기타외식	낙지 등 해산물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아낙촌]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	1		2022.12.3	1		2023.12.3	1
^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7	6	1	8	7	1	8	7	1
서울	_	_	_	-	_	_	_	_	_
부산	5	4	1	5	4	1	6	5	1
대구	_	_	_	-	_	_	_	_	_
인천	_	_	_	_	_	_	_	_	_
광주	_	_	_	-	_	_	_	_	_
대전	_	_	_	-	_	_	_	_	
울산	_	_	_	_	_	_	_	_	_
세종	_	_	_	_	_	_	_	_	_
경기	_	_	_	_	_	_	_	_	_
강원	_	_	_	_	_	_	_	_	_
충북	_	_	_	_	_	_	_	_	_
충남	_	_	_	_	_	_	_	_	_
전북	_	_	_	_	_	_	_	_	_
전남	_	_	_	_	_	_	_	_	_
경북	_	_	_	_	_	_	_	_	_
경남	2	2	_	3	3	_	2	2	_
제주	_	_	_	_	_	_	_	_	_

5. 바로 전 3년간 [아낙촌]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년	5	1	0	0	0	6
2022년	6	1	0	0	0	7
2023년	7	1	0	1	0	7

아낙촌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지를 확인하십시오.

- 6. [아낙촌]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아낙촌외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은 없습니다.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아낙촌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지역	지역 2023년말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비고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7	401,152	11,232	518,642	12,996	227,777	4,556	
서울	_	해당없음						
부산	5	412,328	12,885	514,878	10,298	287,735	9,591	
대구	_	해당없음						
인천	_	해당없음						
광주	_	해당없음						
대전	_	해당없음						
울산	_	해당없음						
세종	_	해당없음						
경기	_	해당없음						
강원	-	해당없음						
충북	-	해당없음						
충남	-	해당없음						
전북	-	해당없음						
전남	-	해당없음						
경북	-	해당없음						
경남	2	해당없음						5곳 미만
제주	_	해당없음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은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하며, 당사는 추정 매출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8. [아낙촌]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아낙촌]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	7개	2,096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지사 및 지역총판 등 지역사무소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아낙촌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37p] 를 참고하십시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산우체국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지점 또는 부서	주소	부산우체국 전화번호
부산우체국	금융팀	부산시 중구 중앙로 77 부산우체국(아낙촌) 600015-01-018675	051-600-3000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계약 체결 후 익일까지 부산우체국에 가맹금 예치와 예치증서를 보관하셔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화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비를 우체국에 예치하므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별도의 보증 보험회사와 피해보상 보험 계약은 체결하지 않습니다.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아낙촌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되며,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으며,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비용	거래 해당업체	예치하지 않음	점주와 해당 업체거래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1,000]				
가입비	5,500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영업 개시 이전까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계약 해지	실제비용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사후 가입비로 전환)
교육비	5,500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로, 당사는 어떠한 명분의 보증금을 수령하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	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			
해당없음					

귀하는 당사 제공 물품 주문시 당사와 제휴한 포스회사의 "선결제주문시스템" 으로 주문하여야합니다. (포스 제휴업체: 포스메카) "선결제주문시스템"이란 귀하가 당사에서 관리, 공급하는 품목 주문시 주문 대금이 당사로 "선결제" 되어야만 물류 회사로 주문이 발송되는 시스템으로 "선결제" 되지 않으면 주문을 하실 수 없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첫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합계	[11,000]
가입비	5,500
교육비	5,500
계약이행, 물품 현금 보증금	해당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23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90,200~ 104,500]	[1,804~ 2,090]			[실평수 50평 기준]
필수설비(정착물)	해당없음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본부미지정/ 점주선택	66,000	1,320	계약:60% 중도:30% 잔금:10%	공사 전 계약취소	3.3㎡ 늘어날 때마다 1,320 추가부담
간판/실사류	본부미지정/	5,500~	110~	계약시:50		

	점주선택	9,900	198	% 완료시:50 %		
주방기물류	본부미지정/ 점주선택	4,400~ 8,800	88~ 176	계약시:50 % 완료시:50 %		기존기물, 중고활용
그릇류	본부미지정/ 점주선택	7,700~ 9,900	154~ 198	주문시:10 % 입고시:90 %		
본부공급품목	포스메카	2,200~ 3,300	44~ 66	포스선결제	상품 미공급시	
일반식자재	본부미지정/ 점주선택	2,200~ 3,300	44~ 66	입고:100%	상품 미공급시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본부미지정/ 점주선택	2,200~ 3,300	44~ 66	점주 직접지급		사은품,이벤트 유니폼, 비품, 소모품 기타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간판은 후렉스 전면간판 가로7,000*세로1,200, 돌출간판 가로800*세로3,000 기본 사이즈 금액이며, 점주의 선택으로 간판 사양 변경은 가능하며 추가 비용은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으로합니다.

기본 간판 사이즈 초과시 또는 해당 점포별 간판이 추가될 시에는 별도의 견적을 사전에 협의 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하며, 실내 실사물 및 인쇄물은 점포의 규모와 인테리어 별로 상이 합니다.

귀하가 지정한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점포 실 평수에 대하여 3.3㎡ 기준으로 [220천원(부가세포함)]을 인테리어 공사 전에 본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당사의 컨셉을 공사한 경험이 없는 업체의 공정에 대한 감리뿐만 아니라 차질없이 가맹점을 개점하기 위해 추가로 발생되는 인건비 등의 제반 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당사 제시외 별도 지급 예상 명세]

개별 점포의 특징에 따라 가맹희망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 실행 전에 비용을 협의한 후 진행합니다.

내용	내용	비고
점포관련비/부동산중개료	에어컨/난방용품/TV	홀 급기및배기관 공사비용
건물용도변경관련비용	기본간판규격및수량초과시	화재보험/음식물배상보험등
기존점포시설물철거비용	화장실관련비용	기타사전협의되지않은내용
외부익스테리어/테라스	앰프/스피커/컴퓨터/전화기	

전기승압관련비용	포스/CCTV/보안경비/호출벨	
1층이상외부닥터설치비용	인터넷/전화/유선방송설치	
점포별환경개선분담금	주방정수기/홀정수기	
정화조신설 및 증설비용	화장실비데설치	
외부수도배관공사비용	도시가스설치공사비용	
판넬냉장/냉동고제작비용	지하에영업장이있는1층과 2층이상 우레탄 방수공사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 희망자가 직접 점포 선정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가 직접 가맹 점포를 선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는 당사에서 가맹점포를 알선 및 중재할 경우 부동산 중개료 외 별도 비용을 방지하기 위함 이며, 부득이 당사로 점포 개발을 의뢰할 시에는 점포 개발에 소요되는 별도 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며, 점포 계약 전에 당사의 가맹 점포로서 가능한 지를 반드시 당사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당사와 협의하지 않고 귀하의 임의 판단으로 점포 계약을 진행한 경우 가맹점 계약이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점포 계약금 등의 손실 등에 대한 책임을 당사에 물을 수 없습니다.

가맹점포 선정시 당사의 제한적 의견이나 조언을 이유로 영업부진 또는 수익성 저하에 대한 책임은 당사에 물을 수 없습니다.

점포의 최종 결정과 향후 영업 및 매출 수익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귀하의 판단으로 하며, 가맹본부 의견 입지에 대하여 귀하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하의 의견에 따르기로 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아닐 것 피성년 후견인이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	-----	-----------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아낙촌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귀하가 아낙촌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직접 시공 및 기물구입 등을 진행할 시비효율적인 업무동선, 부적절한 기물배치로 여유공간 미활용, 컨셉과 디자인의 부조화 등으로인한 인건비 및 금전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의 요청시 당사 거래처를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8) 당사는 가맹계약시 가맹금을 부산우체국에 예치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할부 또는 분할 납부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37p] 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본부	₩O	해당없음			
리스료	본부	₩O	해당없음			
광고 분담금	본부	₩0	해당없음			
판촉 분담금	본부	₩0	해당없음			
교육 훈련비	본부	필요시 협의	해당없음			
간판류 임차료	본부	₩0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본부	법적본사부담금 액 제외액	해당없음			[40p] 참조
영업지역 보장금	본부	₩0	해당없음			
시설, 각종 기기의	본부	전액 가맹점부담	해당없음			

교체보수비용					
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법적본사부담금 액 제외액	해당없음		[40p] 참조
재고관리 비용	본부	전액 가맹점부담	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	본부	전액 가맹점부담	해당없음		
POS 사용료	본부	포스업체지급	해당없음		
지연이자	본부	연1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물품대 등 지급기한을 경과 했을 때 부담

당사는 가맹점포의 점포환경개선(리모델링 등..)을 강제를 하지 않으며, 가맹점 사업자의 자율적 판단으로 실행하도록 합니다.

귀하가 당사에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고정 비용은 없으며, 당사의 판단으로 TV, 라디오, 신문, 책자 등 전국 또는 시도별 단체 광고를 진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점 사업자와 다수결 원칙으로 광고의 내용과 비용을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매월 또는 일정횟수를 정하여 가맹점 정기 방문하는 점포관리는 하지 않으며 당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포스의 자료를 분석하여 비정기적으로 방문 또는 휴대폰, 우편, 전자 메일 등으로 통보하고 관리합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해당없음		점주직접관리
회계처리	해당없음		점주직접관리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100]				

추가 교육비	협의결정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추가교육 필요시
점포 이전비	점주선택	점주선택	점주선택		점주선택
재계약가맹비	1,100	계약연장(갱신) 후 3일 이내	3일이내 계약 취소시	가맹점모집을 위한 비용	신규 가맹비 50% 이내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 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 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 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 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 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 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 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 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아낙촌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할 비용은 없습니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와 계약 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35p] 에 나와 있습니다.

가맹비: 양도 가맹점사업자의 잔여 계약 기간까지는 당사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규교육비: 양수 가맹점주 신규교육 [5,500천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 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 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 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내 (10%~5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제적 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아낙촌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 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아낙촌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해물왕갈비찜			
매운낙지덮밥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낙지볶음	판매할 수 없으며, 다른 메뉴의 판매를 희망시에는		기메거시어키노
낙새/낙곱/낙곱새] 내ㅠ의 판매들 의정시에는]사전에 본부와 협의를 거친후	1회 위반: 구두 경고	가맹점사업자는 본부 신메뉴 출시
통마리낙지전골(소)	판매하여야 합니다.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시에는 이에 적극
통낙지곱창전골(곱창)	가맹점사업자와 본부와의 의견이 상충될시 에는 본부의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동참 하여야 합니다.
	의견에 따르기로 합니다.		
기타 신메뉴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 본부로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된 고객에 대해 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고등학교 재학생	スセ	거래상대방별로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미성년자	구류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청소년보호법 상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으며 만약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벌금과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해물 왕갈비 찜	48,000(400g) 55,000(500g) 60,000(600g)		
아낙 해물탕	60,000 65,000 70,000		
아낙 해물찜	45,000 50,000 56,000		
석거낙지 연포탕	55,000 65,000		
아낙 불향 쭈꾸미	15,000		
아낙 불향 쭈꾸미 삼겹살	18,000		
낙삼콩	36,000 46,000 56,000		
통낙지 곱창 전골	38,000	변경시 유선, 카톡,	2023.12월 기준
낙지 불고기 전골	38,000 45,000	메일통보 합니다.	점별 희망메뉴선택
낙지볶음	11,000		
낙새	12,000		
낙곱/낙삼	13,000		
낙곱새/낙삼새	14,000		
산낙지 볶음	17,000		
맵싹 콩나물 낙지	14,000		
맵싹 콩나물 산낙지	18,000		
매운 불향낙지	15,000		
낙지 물갈비	38,000 48,000 58,000		

볶음밥	2,000
주류	
음료수	
신메뉴 개발 추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 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으며, 당사 및 당사 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 한 업종의 직영점 및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등 글만 집중 경기 	가맹본부	계열회사
해물요리 업종	아낙촌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1)인구 2만명 당 1점포		
2)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km	범리에 선산되어 표기	
3)행정구역당 1점포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가맹계약 체결시 위의 조건 중 하나를 선택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영업지역을 결정하여 계약서에 지도를 별첨합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인정되는 경우	기매저시어지에게 서며 토지 →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 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당사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동의없이 영업지역을 변경하지 않으며 지역 여건의 변화로 가맹점간의 영업지역이 중복되는 등의 경우에는 점주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으며, 본부의 조정시에는 가맹점주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아낙촌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아낙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아낙촌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 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 기간은 계약 갱신일로 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지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	-----------

	D darr)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D-180 ~ D-90
예→②, 아니오→⑦	D 100 D 3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D 100 D 00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D 100 D 00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	
까?	①+15일 이내
예→B, 아니오→A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D-180 ~ D-90
예→B, 아니오→®	D-10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D (00) (12)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	
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_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_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 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 을 지키지 않은 경우	36조 1항
○ [아낙촌]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원·부재료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기 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2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37조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 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ㅇ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하수 없게 된 경우	할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무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역 기업 보건(15억) 사업의 성업기업 명령 이 가명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역 기업 보건(15억) 사업의 성업기업 명령 기업	구 설 37조 2항
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정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한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합 = -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ㅇ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해당없음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 계약서에 정한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환매 제도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로 서면 통지 후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성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조스하 거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본부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가맹 신규 교육비 [5,500천원]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 가맹 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 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 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양도절차에준한다.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_		

상속의 경우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사의 판단으로 상속인이 정산적으로 아낙촌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가맹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만, 전문 경영인의 도움 등 자구책을 강구하는 경우에는 당사와 협의하여 가맹 계약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영업지역 내에서 귀하가 아낙촌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아낙촌과 유사한 메뉴와 명 칭, 용기,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 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본부 (051-314-3399)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아낙촌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1:00~22:00(11시간이상)	일요일, 공휴일외 영업	문의: 본부 (051-314-339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심야시간대(오전 01시~06시) 영업을 강요하지 않으며, 가맹점사업자의 필요에 의한 자율적 선택으로 하며, 영업시간 및 심야 시간대 영업 여부는 당사의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홀 2명 이상	가맹점사업자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주방 3명 이상	직접 근무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가맹점사업자는 주방의 메뉴조리와 동선, 전체 인원관리 등을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만 성공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귀하께서는 최소 3개월 이상 주방에 먼저 근무한 다음 홀 과 전체 업무를 하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신규교육 이수 후에 가맹점의 메뉴조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고, 신규 조리 전수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가 아낙촌의 메뉴를 완벽하게 조리 하지 못할 경우 메뉴의 품질저하, 직원 이직으로 인한 고객 불만 및 매출 하락의 중요한 요소 가 됩니다.

주방 및 홀의 직원수는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만, 최초 점포 개점 시에는 직원 업무가 미숙한 관계로 여유있게 직원을 고용한 다음, 직원들의 업무 숙달도에 따라 점차적으로 적정한 인원수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매월 정기적으로 가맹점을 방문하여 관리. 감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에 따른 인건비등의 고정 비용이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가맹점 방문 점포 관리는 하지 않으며, 통일된 포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당사의 판단으로 전화, 카톡, 메일 또는 방문하며, 별도의 가맹점 관리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아낙촌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하여 가맹점과 비용을 분담하는 전국 및 지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개별 점포별 광고 및 행사의 경우에는 개별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며, 당사에서 별도로 물품이나 인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소단위로 광고,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고 및 행사의 내용과 디자인 등 가맹점 전체의 이미지 훼손방지와 가맹점 사업자의 실질적인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사전에 당사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당사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 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20p]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OO기관에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진행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점 소요 기간은 일반적인 가맹점 개설시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계약하는 점포의 특수성에 의하여 철거, 인테리어, 외부 공사의 규모 그리고 기상 조건 등의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으며, 철거가 완료되어 인테리어를 시작하는 시점이 되어야 점포의 개점 일정을 대략확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의 영업표지 변경 비용 등 점포 환경 개선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가맹점주 의견으로 하는 것으로 하며, 당사는 개선 등 일체의 권고를 하지 않음과 당사에서 분담하는 비용도 없습니다.

점포환경 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해당없음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개별점의 판매촉진 행사시 인력 또는 비용을 별도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지 않습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아낙촌 가맹점사업자에게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워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한 조기 안정화 자금지원, 매출부진 경영지원 등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아낙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음식 가공 POS 사용, 입금 방법 등	본사지정장소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신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신메뉴출시등 필요시	신메뉴출시 및 점포별 필요시 필수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아낙촌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25일 이상(출퇴근, 숙박없음) 가맹점사업자 및 직원대상	5,500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필요시 통보	필요시 통보	신메뉴출시 및 점포별 필요시 필수교육

교육이수 시간은 오전11:00~22:00 이내로 하며, 식사 및 교통비, 숙박 등 당사에서 지급하는 경비는 없으며, 식사는 당사 직원과 함께 하는 것으로 하며,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추가로 교육을 받을 시에는 이에 따른 인건비 및 기타 부대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급하여야 합니다.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으며, 가맹점 사업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 추가 교육 진행시 추가 인원에 따라 비용이 추가되며, 조리 신규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아낙촌의 메뉴를 조리할 수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하는 교육 대리인의 인적사항]

교육 대리인 성명 : 연락처 : 관계: 교육 위임 가맹점사업자의 성명 : (인)

교육을 이수한 대리인이 이직하였을 경우에는 당사로 대리인 재 교육을 요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신규 교육비 [550만원]을 당사로 지

외식업 특성상 직원 이직율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신규 교육을 받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신규 교육 미이수로 인한 개점 지연 또는 가맹계약 해지 시 발생할수 있는 점포계약 및 인테리어, 인건비 등의 손실 책임을 당사에 물을 수 없으며, 신규 교육 개시 후에는 교육비 [550만원]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9조에 따라 14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 이수시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9조에 따라 14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 이수시 당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메뉴 조리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메뉴를 판매하실 수 없으며, 신메뉴 교육 통지후 [30일] 이후까지 미이수 시에는 당사의 영업 지시를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맹계약 갱신 또는 연장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부산	아낙촌	부산시 사상구 낙동대로 722, 1층 낙지명가 아낙촌(엄궁동)

상기 직영점은 당사의 대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18년 8개월	기존 직영점 지역 재개발로 인하여 동일상권 내로 이전함 (2004.05.06 개업 후 폐업 2023.01.10 이전 재 개업)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1,009,516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